

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양도인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등록 연월일	
피상속인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등록 연월일	
	주소		시망일	
합병된 법 인	상 호	①	등록번호	①
		②		②
	대표자	①	법인등록번호	①
		②		②
	영업소 소재지	①	등록 연월일	①
		②		②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 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등록 연월일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양도(합병,상속)신고서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의 경우 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나.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다. 「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라.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마. 양도·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1부 바. 양도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2. 상속의 경우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1부 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1부 라.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3. 합병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공고문 사본 1부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1부 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마.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바.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지정공사 업자단체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양도인의 국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5호에 따른 증명서는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